

#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09. 12. 24(목)

산 업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9. 11. 24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9. 11. 24

라. 상정일자 : 2009. 12. 16(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)

- 제안설명 : 환경녹지국장
- 검토보고 : 산업전문위원 박명성
- 질의 및 토론
-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공기업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면하는 등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일부 차구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이사장, 이사, 감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,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장 외에 이사 및 감사도 임원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, 사장·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,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유로 「지방공기업법」이 일부개정(2009. 4. 1)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.
- 다만, 「지방공기업」개정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한 여타 인천시 공사·공단(도시개발공사, 시설관리공단, 교통공사, 관광공사) 조례가 일괄 개정되어 개정조례안 조문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바, 조례안 제9조 제2항 이사의 임면과 조례안 제10조 감사의 임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.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>제9조(이사)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, 정수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와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2.비상임이사의 정수와 자격요건은 공단의 업무와 관계된 실·국장, 예산부서의 장, 공인회계사·교수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·면한다. 다만, 정관에서 규정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9조(이사) ①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공기업 총괄담당부서의 장 ----- -----</p> <p>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이사(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	<p>제9조(이사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제10조(감사) ①감사는 시장이 임·면하며,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감사) ① -- 임면 ----- ----- ---</p>	<p>제10조(감사) ① ----- 임면하되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### < 질 의 >

#### ○ 김을태 위원

-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?
- 공단 이사장의 독단운영 예방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< 답 변 >

#### ○ 환경녹지국장 정연중

- 임원추천 위원회는 총 7명으로 시장 추천 2명, 시의회 추천 3명, 공단 이사회 추천 2명임.
-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공사의 임직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.

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.

나. 반 대 : 한도섭, 배영민, 강석봉, 김성숙, 김을태, 신영은 위원

※ 조례안 제9조제2항 “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이사(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”를 “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로 수정하고,

조례안 제10조제1항 “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”를 “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.

## 6. 수정안 요지

- 조례안 제9조제2항 “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이사(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”를 “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로 하고,

조례안 제10조 “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”를 “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로 한다.

## 7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 : 6명)

## 8. 기타특이사항

- 없음

붙임 :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#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2항 “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이사(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”를 “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로 한다.

안 제10조제1항 “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”를 “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로 한다.

#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, 정수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와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2. 비상임이사의 정수와 자격요건은 공단의 업무와 관계된 실·국장, <u>예산부서의 장</u>, 공인회계사·교수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② <u>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·면한다. 다만, 정관에서 규정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(이사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<u>공기업 총괄담당부서의 장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이사(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조(이사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<u>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0조(감사) ① 감사는 시장이 임·면하며,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감사) ① ----- -- 임면 ----- ----- 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0(감사) ① ----- <u>임면하되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1년을 단위로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임·면”을 “임면”으로, “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예산부서의 장”을 “공기업 총괄담당부서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1조 제목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계리”를 각각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27조 단서 중 “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3조 중 “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3호·제17조제6호·제29조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6조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임·면”을 “임면”으로 한다.

제17조 각 호외의 부분·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·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·제29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정관)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~12. (생략) 13. 기타 필요한 사항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임원) ① (생략) ② 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8조(이사장) ① 이사장은 시장이 <u>임·면하며</u>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<u>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</u>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, 정수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비상임이사의 정수와 자격요건은 공단의 업무와 관계된 실·국장, <u>예산부서의 장</u>, 공인회계사·교수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 ② <u>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</u> 이사장이 임·면한다. 다만, 정관에서 규정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5조(정관) ① ----- -----.</p> <p>1.~12. (현행과 같음) 13. 그 밖에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1년을 단위로</u>----- -----</p> <p>제8조(이사장) ① ----- <u>임면</u>----- <u>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</u>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이사) ①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<u>공</u> <u>기업 총괄담당부서의 장</u>----- -----</p> <p>② <u>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u> 다만, <u>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감사) ① <u>감사는 시장이 임·면하며,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감사) ① <u>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이사회) ① <u>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u></p> <p>④ <u>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<u>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<u>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<u>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<u>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2조(이사회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-----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-----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-----</p> <p>⑥ -----</p> <p>-----</p>
<p>제16조(직원의 임·면) <u>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·면한다.</u></p>	<p>제16조(직원의 임면) -----</p> <p>-----</p> <p>임면-----</p>
<p>제17조(사업) <u>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</u>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<u>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업</u></p> <p>7. (생략)</p>	<p>제17조(사업) -----</p> <p>-----</p> <p>각 호-----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</u> ---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1조(계리의 원칙)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<u>계리</u>한다.</p> <p>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<u>계리</u>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</p>	<p>제21조(<u>회계처리</u>의 원칙) ① ----- ----- ----- <u>회계처리</u>----- ② ----- --- <u>회계처리</u>----- -----</p>
<p>제18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제17조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8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3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	<p>제23조(손익금의 처리) ①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1.~3.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1.~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시유재산의 사용) 공단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제27조(시유재산의 사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9조(감독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</p>	<p>제29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<u>각 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에</u> -----</p> <p>-----</p>
<p>제33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</p> <p>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 실·과·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.</p>	<p>제33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</p> <p>-----</p> <p>----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-----</p> <p>-----</p>